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743호(號) 1929년(昭和 4) 6월 25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23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6월 25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목재(당목[唐木], 명목[銘木類])를 제[除]하고, 포장용[包裝用] 상판[箱板]을 포함[包含]함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품 목(品目)	발 역(發驛)	착 역(著驛)	급종별(扱種別)	임 륜(賃率)	기 사(記事)
목재(木材: 당목[唐木], 명목류[銘木類])를 제[除]하고, 포장용[包裝用] 상판[箱板]을 포함[包含]함	신의주(新義州), 단동[安東], 부령(富寧), 고무산(古茂山), 회령(會寧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차급(車扱)	1할(割)3푼(分) 감(減)	본(本) 운임(運賃)은 승인운송점(承認運送店)의 환급운임계산액(還給運賃計算額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으로 함
	동(同)	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, 부산진(釜山鎭)	동(同)	4급(扱)의 것 2할(割) 감(減) 5급(扱)의 것 2할(割)5푼(分) 감(減)	
	동(同)	인천(仁川), 목포(木浦), 군산(群山), 원산(元山)	동(同)	2할(割) 감(減)	
	동(同)	진남포(鎭南浦)	동(同)	1할(割)5푼(分) 감(減)	